

글로벌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장학금 지급 기준

사회교육원장 품의 2007. 12. 5.

사회교육원장 품의 2012. 3. 8.

사회교육원장 품의 2014. 3. 19.

사회교육원장 품의 2016. 5. 12.

사회교육원운영위원회 통과일자 2017. 4. 28.

글로벌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 통과일자 2021. 9. 3.

글로벌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 통과일자 2022. 7. 1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영남대학교 글로벌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의 학점은행제 운영지침 제27조(장학금) ②항에 근거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장학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2., 2021.9.3>

제2조(적용범위)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선정과 지급에 관하여 국가기관 또는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본 기준을 적용한다.

제2조2(장학 구분) 본 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내장학금 : 본원회계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2. 교외장학금 : 외부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기탁하는 장학금

[본조 신설 2016.5.12.]

제3조(장학종별 선발기준 및 지급내역)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특별장학금 :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당자에게 본인 수강료 범위 이내에서 정액 또는 정율의 특별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1.9.3.>

1. 본원의 발전 및 홍보에 특별히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학습자
2. 학습자 유치와 관련하여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품행이 단정하고 학습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학습자
4. 기타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한 자

② 기여장학금 : 국가 또는 학교에 그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 하는 장학금 <신설 2016.5.12.>

③ 진흥장학금 : 특정 분야의 특기를 지닌 유능한 인재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 또는 특정 입학자에게 면학을 권장하고자 지급하는 장학금 <신설 2016.5.12.>

④ 교외장학금 : 외부의 장학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기탁될 경우 지급한다.

제3조2(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 신설 2016.5.12.]<개정 2017.4.28., 2022.7.13.>

제3조3(장학금신청자 구비서류)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장에게 장학종별 선발기준에 적합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5.12.]

제4조(수혜기간) 장학금의 지급은 수혜사유가 발생한 당해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

으로 한다. <개정 2016.5.12.>

제5조(이중수혜 제한) ①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2.>

1. 학습비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16.5.12.>

2. 원장이 장학상 필요하여 인정한 경우 <신설 2016.5.12.>

제6조(장학금 수혜자격 상실) 장학금 수혜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할 경우 장학금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부칙(2007.12.5.)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0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3.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5.12.)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4.28.)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산학장학금 기준은 2017학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학습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9.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7.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 <신설 2016.5.9.> <개정 2017.4.28., 2022.7.13>

장학금종류	선 발 기 준	장학금 지급내역		비고
		금액	기간	
기여 장학 금	교직원 복지 장학금	우리 대학교 교직원(비정규직, 퇴직자 포함)인 본인으로서 별도의 신청기간에 신청에 의거 지급	학습비의 30%	1개 학기
	국가유공 장학금	교육보호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 신청에 의거 지급 1. 국가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자녀 : 직전학기 학업성적 실점수평균이 70점 이상인자	국가보훈처에서 정하는 금액 * 본인 : 학습비의 100% (본원재원) * 자녀 : 학습비의 100% (본원재원 50% + 국가보훈청재원 50%)	1개 학기 단,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168학점까지 지원 가능
	리더십 장학금	전공별 · 학급별 기여자(대표 및 총무)로서 교육원에 모범이 되고, 당해학기 12학점 이상 수강 중이며,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과락없이 C(2.0) 이상인 자(신입생의 경우 제외)에게 별도의 신청기간에 신청에 의거 지급	학습비의 15%	1개 학기 ① 하계, 동계학기 학습비는 제외 ② 학급별 15명 미만은 제외
진흥 장학 금	군장학금	군인 또는 군무원 재직자로서 별도의 신청기간에 신청에 의거 선정 지급	학습비의 20%	1개 학기 단, 재직자에 한해 적용(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천마가족 장학금	본원에 학생의 가족(2촌이내 혈연관계- 부부, 형제, 자매 등)이 동시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로서 별도의 신청기간에 신청에 의거 지급	학습비의 10%	1개 학기 대상자 각각 10% 지급
	산학 장학금	본원이 지정한 기업(관)에 재직하며, 최초 수강학기에 12학점 이상 수강하는 자로서 별도의 신청기간에 신청에 의거 지급	학습비의 20%	1개 학기 단, 재직자에 한해 적용(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교외장학금		외부의 장학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기탁된 경우 선발 규정에 의거 지급	각 외부장학 단체의 기탁금	지정 학기